

# 표준시도회운영세칙

2006. 7.25. 제정

2013.10.22. 개정

## 전문

정관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본 표준시도회 운영세칙을 정하며 각 시도회는 본 세칙의 기준과 범위에서 각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과 본 00시(도)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이 세칙을 정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시도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00시(도)회라 칭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본 00시(도)회의 주된 사무소는 관할 행정청인 00시(도)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리·교통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본 세칙은 00시(도)회 산하 모든 조직과 이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(직원포함) 및 관할 내 거주하는 미배치 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.

**제5조(업무)** 본 시(도)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관에서 위임 받은 업무의 집행
2. 본회로부터 승인 받은 각종 사회보장보험사무의 대행
3. 회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회원 및 관리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
5. 시(도)회 홈페이지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
6. 그 밖의 시(도)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2장 회원관리

**제6조(회원)** ① 본 시(도)회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(직원포함)과 미배치 거주 회원은 본 시(도)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.

② 시(도)회장은 신입 회원에게서 정관 제8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협회에서 정한 “입회신청서” 제출을 통하여 회원등록을 받는다.

③ 시(도)회장은 입회 신청서와 입회비를 수납 후 정관 제9조 규정의 회원명부에 등재한다.

**제7조(입회비)** 시(도)회장은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입회비로 한다.

**제8조(회원관리)** 시(도)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회원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.

1. 근무지 변경(타 시도회, 타 지부로의 전·출입 등)
2. 협회 탈퇴
3. 사망
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원의 신상변경

**제9조(회원번호)** ① 시(도)회장은 관할 소속 지부에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확정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6조의 신규회원 입회 시에는 회원증 발급에 따른 회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** 본 시(도)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가. 회원의 권리 :

1. 시(도)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2. 본 세칙에 따른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3. 그 밖에 회원의 권리를 균점·향유하는 권리

나. 회원의 의무 :

1. 시(도)회 세칙 및 윤리강령의 준수 의무
2.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
3. 회비 납부의 의무
4. 시(도)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, 보고이행 및 제8조제1항 각호의 변

## 동사항 보고

**제11조(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)** ①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

②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

## 제3장 시(도)회 총회

**제12조(시(도)회 총회의 구성)** ① 시(도)회 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.)는 회원으로 구성하며, 시(도)회장은 시·도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회원의 수가 400명을 초과하여 총회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시는 “대의원제”로 할 수 있다.

② 대의원제 채택 시는 대의원 정수를 해당 시도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**제13조(총회의 개최 및 소집)** ① 시(도)회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전에 시(도)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(도)회장이 소집한다.

1. 시(도)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
3.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제출과 함께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의 총회는 소집요구 날부터 20일 내에 소집한다. 이 기간 내에 시(도)회장이 소집을 아니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한다.

⑤ 총회 소집 시는 총회의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까지 시(도)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이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대의원)** ① 대의원은 회원의 비례에 따라 각 지부에 선출할 대의원 수를 배분하여야 한다.

② 선출할 대의원 수를 배분받은 지부는 그 수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남은 대의원을 선출한다. 본 선출은 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지부총회에서 다

득표 순위로 한다. 다만, 각 지부 사정에 따라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지부회의 등에서 다득표 순위로 선출할 수 있다.

③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중의 회원과 다른 시도회로의 근무지 변경된 회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④ 대의원의 궐위 시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대의원의 궐위수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15조(당연직 대의원)** 시(도)회장 및 시(도)회 감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부별 선출 대의원으로 보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대의원의 임기)** ①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 대의원의 궐위로 보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7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1의2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

2. 임원 선출 및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

3.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

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친 사항

② 총회에서의 의결은 공고된 의안의 안전에 한한다.

**제1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회원으로 구성하는 시(도)회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,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시(도)회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19조(회의록 작성 및 보관)** ①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출석 운영위원 5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외비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 의사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조직운영

## 제1절 임 원

제20조(임원) 본 시(도)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시(도)회장 1명
2. 부회장 5명 이내
3. 운영위원 40명 이내(시(도)회장, 부회장 및 지부장을 포함한다.)
4. 시(도)회 감사 2명

제21조(임원 선출 등) ① 시(도)회장과 시(도)회 감사는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(도)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임명직 운영위원은 시(도)회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
- ④ 시(도)회장은 선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임원의 보선) 시(도)회장의 궐위 시는 시(도)회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. 다만,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기타 임원의 경우에도 같다.

제23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(도)회장과 시(도)회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24조(감사의 업무) ① 시(도)회 감사는 매 반기별로 시(도)회의 업무전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.

- ② 시(도)회 감사는 필요한 경우 각 지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지부의 감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시(도)회 감사는 감사 결과를 시(도)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에 보고 할 수 있다.

제2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정관 제30조의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본 시(도)회 임원에게도 적용된다. 단, 본 시(도)회 회원자격 취득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지부장 또는 시(도)회 감사의 피선거격이 없다.

- ②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

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26조(임원의 불신임)** ①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그 때부터 당사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결의가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.

② 제1항의 불신임 발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시(도)회장에 대하여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서가 총회에 접수된 때
2. 시(도)회 감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발의 의결서가 총회에 접수된 때
3.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시(도)회장 또는 운영위원 5명 이상의 발의 연명서가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때

③ 제2항의 불신임 발의 접수기관은 즉시 당해 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불신임 의결기관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의결 심의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시(도)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심의 의결시는 권한대행 부회장이 총회를 주재한다.

**제27조(불신임의 의결)** ① 시(도)회장 및 시(도)회 감사는 시(도)회 총회(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,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)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지부장은 해당 지부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③ 그 밖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28조(임원의 보수)** ① 상근 임원은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 임원에게는 실비의 수당,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상근 임원의 필요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③ 임원의 보수 그 밖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(도)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29조(고문)** ① 시(도)회장은 덕망과 학식을 갖추고 시(도)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할 수 있는 사람과 전임 시(도)회장 등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시(도)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률, 노무,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 제2절 운영위원회

**제3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** ① 운영위원회는 제20조의 1호 내지 3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(도)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③ 시(도)회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**제31조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
2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
5.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·총회 상정
6.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
7.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화합을 위한 사항
8. 부회장 임명사항과 기타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
9. 지부의 편제에 관한 사항
10. 시(도)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
11. 그 밖에 이 세칙에 명시된 사항과 본 시(도)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32조(운영위원회의 종류와 소집)**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시(도)회 감사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긴급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어 시(도)회 감사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요구한 때

3.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시(도)회장에게 제출하며 요구한 때

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목적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3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33조(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)**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
②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은 제20조를 준용한다.

### 제3절 분과위원회

**제34조(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)** ① 본 시(도)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.

1. 총무위원회
2. 법제위원회
3. 교육위원회
4. 정보위원회(홍보업무 포함)
5. 윤리위원회(상벌업무 포함)

② 본 시(도)회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상설기구로서 선거관리, 예산·결산, 공제사업, 사무조합 대행,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35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(도)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(도)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36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)** 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한 회장의 임기 만료 등, 기타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임기를 종료할 수 있다.

**제37조(위원회의 업무)**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, 운영 및 예산지원 등은 정관 제35조의 목적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

## 제4절 사무국

**제38조(사무국)** ① 본 시(도)회의 사무국장 이하 직원은 시(도)회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본회 사무총장은 일반 업무와 위임업무에 대하여 시(도)회의 사무국장 이하 직원을 지시·감독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시(도)회장의 사전양해와 협조를 구한다.

③ 사무국장은 본 시(도)회의 다음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.

1. 본회에서 위임한 행정 및 회계업무
2. 지방자치단체 인가 교육사업 및 본회 교육사업 진행
3. 회의의 준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4.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수행

④ 사무국장은 시(도)회의 각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⑤ 시(도)회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의 증원을 회장에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9조(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)** 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## 제5절 지부조직

**제40조(지부 구성)** ① 본 시도회의 지부는 00시, 군, 구의 행정구역을 설치 기본 지역으로 하여 구성한다.

② 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지부 내의 단지에 배치된 회원과 미배치 거주회원은 해당 지부의 회원이 된다.

③ 지부에는 지부장, 부지부장, 지부감사, 지부총무 등의 임원을 둔다. 다만, 부지부장은 지부의 사정에 따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41조(지부 임원 등의 선출)** ① 지부장과 지부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. 선출된 지부장은 즉시 시(도)회장에 선출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다.

② 부지부장과 지부총무, 분회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. 다만 분회장은 분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.

③ 지부장과 지부 감사는 지부회원 자격취득 6개월을, 그 밖에 지부 임원은 3개월 경과를 자격요건으로 한다.

**제42조(선출 정족수)** ① 지부장과 지부 감사는 지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후보자가 복수인 때는 다수득표자로 한다. 다만, 각 지부 사정에 따라 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② 분회 회원은 분회장 직접 선출할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.

**제43조(선거업무의 감독 지휘)** ① 분회선거관리 위원회는 시(도)회, 지부, 분회 등의 선거업무를 지도 감독한다.

② 선거업무에 관련된 시(도)회 산하 회원은 제1항의 지도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44조(시도회 보고업무)** 지부총회의 개최, 지부임원의 선출, 임원 선출의 확정 등은 행위 업무 5일 전 또는 5일 내에 시(도)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고는 지부장 또는 지부장 권한대행자가 한다.

**제45조(지부임원의 임기)** 지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6조(지부 총회)**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회원관리와 본 시(도)회 운영세칙에 따라 회장이 위임 또는 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지부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**제47조(지부 총회 소집)** ① 정기회의는 격월 또는 분기별로 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.

1. 지부소속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제출하며 요구한 때
2. 시(도)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
3.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③ 지부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지부장은 지부회의 소집할 때에는 소집 5일 전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

소, 등을 지부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48조(지부 총회의 의결 및 업무)** 지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의결 및 집행 한다.

1. 의결업무 :

- 가) 지부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- 나) 본회 및 시(도)회 위임에 의한 대의원 선출
- 다) 지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

2. 집행업무 :

- 가) 시(도)회장이 위임한 업무
- 나) 지부 관할의 회원 관리
- 다) 지부운영을 위하여 운영세칙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의결 집행

**제49조(지부 총회 보고)** 지부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후 5일 이내에 본 시(도)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.

**제50조(지부 운영비)** ① 시(도)회장은 일정액의 지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본 지원금 범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② 지부는 정기, 임시 회의 시 참여회원에게 부정기적으로 실비의 운영비를 각출할 수 있다.

③ 지부는 시(도)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연납회비의 범위에서 분회는 반기납 회비의 범위에서 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.

## 제6절 회계, 예산 및 결산

**제51조(회계처리 기준)** ① 회계처리는 정관 제54조에 따라 처리하며, 구체적 기준의 미설정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한다.

② 모든 회계장부는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록, 유지,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기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52조(자산)** 시(도)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- 1. 자산목록에 등재한 자산(부동산, 동산 등)

## 2. 그 밖에 사업으로 인한 수입 등

**제53조(경비충당)** 시(도)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회로부터의 교부금 및 시설물안전교육 등 교육수입, 시(도)회 홈페이지 광고수입, 기타 보험사무 대행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54조(회계연도)** 시(도)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**제55조(예산)** ① 시(도)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.

**제56조(추가경정 예산)** ① 예산안 편성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할 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.

② 제1항의 추가경정 예산과 제56조 제2항의 준예산의 집행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7조(결산)** ① 시(도)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(도)회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(도)회 감사는 정관 제41조제3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7절 포상 및 위임 업무

**제58조(회원의 징계)** ① 시(도)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

1.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
2. 회원의 인격과 품위를 몹시 손상케 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
3. 보고 및 자료제출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몹시 게을리하는 경우
4.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

② 시(도)회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관 제65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협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9조(징계위원회 구성)** ① 윤리분과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필요시 심사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요청한다.

② 시(도)회 운영위원회는 제59조제2항의 징계심의, 징계의결 및 징계보고 요청 등 소속회원의 징계업무를 관장한다.

**제60조(포상)** 시(도)회장은 시(도)회 및 주택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하여 협회장에게 포상을 상신하거나 그 외 직접 포상할 수 있다.

**제61(본회 대의원의 선출)** ① 시(도)회장은 본회로부터 통보받은 대의원의 수를 각 지부의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.

② 제1항의 배분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다.

③ 시(도)회장은 각 지부의 선거행위를 감독 감시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2조(지부의 선출행위)** ① 지부장은 시(도)회로부터 부여받은 수의 본회 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본회 대의원 선출은 선거관리규정 2장에 따른다.

③ 대의원 후보자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피력할 수 있으며 선출은 각각 득표순으로 한다.

**제63조(선출 결과 보고)** ① 지부장은 본회, 시(도)회의 각 대의원의 선출결과를 즉시 시(도)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(도)회장은 각 대의원 명부를 작성 정리하고 본회 대의원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4조(공시 및 수정)** ① 시(도)회장은 본회에 제출한 대의원 명부의 공람 전에 상당한 이유를 발견했을 시는 이를 본회에 수정 보고할 수 있다.

② 시(도)회장은 확정된 대의원 명부를 시(도)회 홈페이지 및 본회 게시판에 이를 공시할 수 있다.

부 칙(2006. 7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총회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(2013. 10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시(도)회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준회원제도는 정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제1항 규정에 따라 정관개정(2013. 3.11)이후 18개월간 유지된다.